

제목 : 『하나 기업어음 특약』 이용약관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『하나 기업어음 특약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행 예정일 : 2022.03.24
- 개정 약관명 : 하나 기업어음 특약
-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 통장에 의한 거래 은행과의 어음매출 거래는 통장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매입 <u>하신</u> 어음실물은 은행이 보관하기로 <u>합니다</u> .	제 1 조 통장에 의한 거래 은행과의 어음매출 거래는 통장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<u>매입한</u> 어음실물은 은행이 보관하기로 <u>한다</u> .	문구수정
제 2 조 입금계좌 지정 은행에 어음 실물을 <u>맡기신</u> 경우에는 <u>어</u> 음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신규시 지정 <u>하신</u>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 <u>하여</u> 드리고 입금된 금액에 <u>대하여는</u>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 <u>하여</u> 드립니다.	제 2 조 입금계좌 지정 은행에 어음 실물을 맡 <u>긴</u> 경우에는 <u>어</u> 음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신규시 지정 <u>한</u>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 <u>하고</u> 입금된 금액 <u>은</u>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 <u>한다</u> .	문구수정
제 3 조 추심료부담 은행에 보관 의뢰한 매입어음을 추심 <u>하는데</u> 비용이 드는 경우는 은행이 추심료를 부담 <u>하겠습니다</u> .	제 3 조 추심료부담 은행에 보관 의뢰한 매입어음을 추심 <u>할 때</u>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은행이 추심료를 부담 <u>한다</u> .	문구수정

<p>제 4 조 어음실물의교부</p> <p>매입인<u>께서</u> 매입<u>하신</u> 어음실물을 직접<u>가</u> 저가고자 <u>하실</u> 경우에는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<u>하신</u> 경우에 한해 은행은 어음실물을 <u>드릴 수</u> 있습니다.</p>	<p>제 4 조 어음실물의교부</p> <p>매입인<u>이</u> 매입<u>한</u> 어음실물을 <u>직접 가</u>저가고자 <u>할</u> 경우에는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<u>한</u> 경우에 한해 은행은 어음실물을 <u>교부할 수 있다</u>.</p>	<p>문구수정</p>
<p>제 5 조 어음실물교부에 따른 면책</p> <p>① 매입인<u>께서</u> 매입<u>하신</u> 어음실물을 은행에 맡기지 <u>아니하시고</u> 직접 보관<u>하시는</u> 중 매입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<u>모든</u>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 매입인<u>께서</u> 직접 보관<u>하시고</u> 있는 매입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<u>하신경우</u>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<u>아니합니다</u>. 그러나 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당초의 매출이자로 계산하여 지급<u>하겠습니다</u>.</p>	<p>제 5 조 어음실물교부에 따른 면책</p> <p>①매입인<u>이</u> 매입<u>한</u> 어음실물을 은행에 맡기지 <u>않고</u> 직접 보관<u>하던</u> 중 매입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u></p> <p>② 매입인<u>이</u> 직접 보관<u>하고</u> 있는 매입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<u>한</u> 경우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<u>아니한다</u>. 그러나 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당초의 매출이자로 계산하여 지급<u>한다</u>.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추가</p> <p>문구수정</p>
<p>제 6 조 어음의부도</p> <p>매입<u>하신</u>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금액을 <u>지급하겠습니다</u>.</p>	<p>제 6 조 어음의부도</p> <p><u>매입한</u>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금액을 <u>지급한다</u>.</p>	<p>문구수정</p>

<p>제 7 조 사고등의 신고</p> <p>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·도난·멸실 등으로 <u>잃으신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/u>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<u>책임지지아니합니다.</u></p>	<p>제 7 조 사고등의 신고</p> <p>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·도난·멸실 등으로 <u>잃어버린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하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.</u>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<u>않는다.</u>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추가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